

제43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회 회의록(요약본)

1. 일 시 : 2013. 6. 28 (금), 15:00 ~ 19: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204호)
3. 참 석 : 김호섭 의장, 이순일 부의장, 이재호 평의원, 이강준 평의원, 임정민 평의원, 정승민 평의원, 김진우 평의원, 윤갑희 평의원 - 총 13명 중 8명 참석
(불참 : 나상신 평의원, 윤성승 평의원, 이효철 평의원, 박윤규 평의원, 강희진 평의원)

4. 의안

- 심의사항 : 학칙 개정 (안)
- 자문사항 : 2013학년도 교비회계 제 1차 추경 (안)
- 기타 논의 사항
 - 학칙 사전공고 기간 변경 (안) 논의
 - 본교 법적 분쟁 현황 관련 사항 논의

5. 회의결과

가. 심의사항

- 아래의 학칙 개정 내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함.

[주요 개정내용]

- 제3조(정의)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학과간 협동과정의 문구 수정
- 제8조(대학원) 및 제23조의 2(계약학과) : [별표4] 및 [별표10]의 경영대학원 '생산운영관리' 전공을 'MS/OS' 로 명칭변경
- 제21조(학생정원) : [별표6] 2013-2학기 일반대학원 정원표기, [별표8] 2013-2학기 특수대학원 정원 조정 결과 반영
- 제49조(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규칙 정비

* 상세내용은 제5차 (2013.5.7) 제8차 (2013.6.18) 교무회의 결과 참조

< 간서명 란 >

의 장



나. 자문사항

○ 2013학년도 제 1차 추경 예산 (안)

- 기획처장이 2013학년도 1차 추경 예산 (안)을 보고함.
 - 운영수입예산 증감(등록금 수입 증가, 국고 수입 감소, 교육경비 증가 등)에 따른 지출 예산 편성
 - 장기 차입금 상환 및 국제학사 신축 재원 차입 예산 편성
(한국사학진흥재단 신규 융자사업(이자율: 3.80%)을 통한 국제학사 신축재원 50억원 차입)
 - 2012학년도 결산 이월분에 대한 지출 예산 편성
- 2013학년도에 예비비로 집행된 소송 비용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및 기타 소송 비용의 교비회계 부담은 부적절한 집행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집행 가능 여부 등을 재확인한 후 2013학년도 제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자문기로 함.
- 교내임대 보증금과 관련된 부분은 캠퍼스 플라자 문제 등으로 수입 감소의 요인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캠퍼스플라자 임대 문제는 2012학년도 본예산 자문이 이루어진 34차 대학평의원회(회의록 32쪽-34쪽)와 2012학년도 교비회계 2차추경 자문이 이루어진 41차 대학평의원회(회의록 45쪽)에서 이미 지적된 문제임. 특히 34차 대학평의원회(2012.01.30.)에서 과거 일괄 임대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내었음에도 (주대복에게 일괄 임대하여 다시 분쟁이 생긴 것은 심각한 문제임.

나. 기타 논의 사항

○ 학칙 사전공고 기간 변경 (안) 논의

- 학칙 사전공고 기간을 7일로 하자는 안이 상정되었으나 학생들의 사전 검토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일에서 14일로 변경기로 함.
- 사전공고의 경우 공지사항 게시판을 활용하는데 공고 내용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게시판 맨 위에 위치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함.

○ 본교 법적 분쟁 현황 관련 사항 논의

- 최근 본교의 법적 분쟁 증가 및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 소송비용의 처리 문제 등과 관련

< 간서명 란 >

의 장



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어 기획팀에 법적 분쟁 현황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함.

- 기획팀에서 평의회에 정리 제출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법적 분쟁 현황과 관련하여 이순일 평의원이 보고함.
- 2008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완료된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건수	비 용
교수지위 확인 소송 등 교원 관련 소송	5건	- 변호사 비용 등 : 18,929천원 - 기타 소송비용 : 791,351천원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유기정 학 처분 무효 확인 등 기타	6건	- 변호사비용 등 : 23,760천원 - 기타 소송비용 등 : 245,320천원

- 법적 분쟁은 그 결과의 성패를 떠나 많은 비용을 수반함으로 사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게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법적 분쟁의 발생을 막기 위해 법적 분쟁에 관한 의사결정 시 책임 있는 권한 행사가 요구됨.
- 법적 분쟁에 대응하는 학교의 업무절차(SOP)를 보면, 학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 모두 법인으로부터 소송위임장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법인임을 의미할 수 있음.
- 실제, 상기 소송들에서 2건을 제외하고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이 모두 학교법인 대우학원이고(아주대학교 총장이 ‘피청구인’ 인 정보공개청구의 소와 학교법인대우학원 이사장 외 총 5명이 ‘청구인’ 인 임차계약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예외), 상기 소송들 중 판결이 났으나 대학이 이의를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건의 경우에도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는 결정 주문의 채무자는 학교법인 대우학원 대표자 이사장으로 명기되어 있음.
- 「사립학교법」 제29조 ⑥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1조 ②항,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1.24. 선고 2012두18875 판결),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지침 등은 일관되게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 다른 회계로 전출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이는 본교가 그간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함.
- 목원대학교(대전지방경찰청에서 횡령혐의로 해당자 검찰 송치), 수원여자대학교(수원지검에서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해당자 불구속 기소), 한영신학대학교(서울남부지법 형사 4단독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해당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등 타 대학의 법적 비용 교비회계 부담 관련 기사 등을 참조하여 본교도 위법

< 간서명 란 >

의 장



성 여부를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 요망됨.

- 2013년 현재 진행중인 법적 분쟁 관련 현황은 ‘교수지위보전가처분이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정학처분무효확인소’, ‘연구비 반환’, ‘학생식당 명도’, ‘어학 교육원 강사 임금 소송’ 등임.
- 위 자료와 관련하여 상세 자료의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법적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의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공개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함.

다. 제언 사항

○ 평의원회 자료 제출 및 공개

-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칙 제 10조에 의거하여 평의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규칙에 맞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평의원회 논의 전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
- 평의원회에서 안전에 대해 논의 후 자료의 공개 여부는 결정할 것임. 학교가 자료를 제출하며 사전에 공개 여부에 대해 의견을 표하면 이를 참조하여 대학평의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함.

○ 대학평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 요청

- 최근 중앙일보, 조선-QS대학평가 등에서 학교 순위가 하락하고 있음. 이에 따른 학교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자구노력을 요청기로 함.

붙임: 2013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 1부. 끝.

위 자료는 제4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추후 관련 주요내용의 녹취록을 첨부해서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1. 2013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가. 관련근거

-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8조 (추가경정예산)
-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18조 (추가경정예산)

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및 주요 내용

1) 운영수입예산 증감(등록금수입 증가, 국고수입감소, 교육경비 증가 등)에 따른 지출예산 편성

- ▣ 특수대학원 등록금 수입 증가에 따른 예산 반영
- ▣ 의과대학 전기이월 감소에 따른 부속병원 전입금(교육운영비) 증가에 따른 예산 반영
- ▣ 국고사업비 지원 감소(고용계약형 사업)에 따른 예산 편성
- ▣ 국제대학원 아르헨티나 장학프로그램등 위탁교육경비 증가에 따른 예산 편성

2) 장기차입금 상환 및 국제학사 신축재원 차입 예산 편성

- ▣ 기존 장기차입금(이자율 4.24%) 전액 상환
[재원:국제학사신축 재원-당해년도 건축기금인출분 / 공사비 이월수입분 / 건축기금적립예정 분]
- ▣ 한국사학진흥재단 신규 용자사업(이자율: 3.80%)을 통한 국제학사 신축재원 50억원 차입 (2013 필요액)
- ▣ 장기차입금 상환에 따른 당해년도 건축적립금 감소[차년도 국제학사 신축 재원]

3) 2012학년도 결산 이월분에 대한 지출 예산 편성

- ▣ 2012학년도 결산에 따른 전기이월 증가 반영(국고 및 연구비 미집행분, 특수대학원 운영차액 등)
- ▣ 의과대학 전기이월 감소 반영